

2015년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< 융합전략과제 >

중소기업의 융 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&D활성화를 위한 『2015년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』의 융합전략과제(舊. 융복합과제)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(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)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월 30일
중소기업청장

1. 지원개요

- “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”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&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&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 창출 지원
- '15년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 : 337억원, 135개 과제(계속과제 포함)
* 지정공모 목록은 <별첨>의 15년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(융합전략과제) 제안요청서 참조

2. 지원내용

지원조건

구 분	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	총사업비			신청방식
		정부 출연금	민간부담금		
			현금 (보증연계 또는 자부담)	현물	
융합전략과제	최대 2년, 6억원	60%이내	15%이상	25%이내	지정공모

* 다만,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, 총사업비의 민간 부담금(민간현금 비율 포함)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

□ 민간부담금(현금) 조달방법

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(현금)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(단,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)

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)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

-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&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 여부를 결정

* 신청 전 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)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 상담 가능

3. 신청자격

□ 공통사항

(주관기관)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

(공동개발기관)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(대학 포함)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

- *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

<공공연구기관(대학포함) 자격요건>

- 국·공립연구기관
- 과학기술분야 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연구기관
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-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
-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
-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
-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
-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
-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-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
-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
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□확인

(서면 대면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(전문기관)

(현장조사)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(관리기관)

*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〈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〉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설립년월일 (창업)	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 *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* 접수마감일 현재 '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'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'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	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rndgate.ntis.go.kr) 조회 등

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- 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- 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15년 1월 30(금) ~ 3월 2(월), 18:00까지

- ※ 마감일 18:00까지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- ※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
- ※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- ※ <http://www.smt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□ 온라인 신청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I	

〈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□접수요령 〉

- ① 1단계 : 회원가입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- 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- 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□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 - [별지 제1-② ~ ⑩호]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
- 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□접수 완료 확인)
 - ☞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확인” 확인 필요

신청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 명	제출방법	해당여부
①	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	Part I Part II	공통
②	중소기업 경영현황표	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	
③	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		
④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	
⑤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	
⑥	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		
⑦	보증연계용 R&D경제성평가 신청서		* 인터넷(SMTECH)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
⑧	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		
⑨	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		
⑩	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		
⑪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		

*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. 5. 1로 기재
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

5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※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서면평가 (3월)

분야별 산□학□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, 유사 중복성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□ 현장조사 및 R&D경제성평가 (3~4월)

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(주관 및 공동)의 신청자격, 기술개발능력, 사업화능력, 과제 중복성,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

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&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

□ 대면평가 (4월)

분야별 산□학□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,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,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□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□ 지원과제 선정 (5월)

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 + 가점 - 감점

□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
□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(5월)

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 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

6. 기술료 납부
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성공”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7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□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※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응 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
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
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
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
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
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□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*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④ 참여제한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
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

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
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'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
재무제표로 근거로 판단

㉠ 기업의 부도, 휴 폐업

㉡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*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
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
□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
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
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
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㉢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
□ 다만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
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
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
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
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⑥ 과제 참여율

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
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
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
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
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
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
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

8. 기타 공지사항

-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 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
사업명	세부 내역사업명
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	융합전략과제(구, 융복합기술과제)
	현장기획과제(구, 센터연계형과제)

-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 기업 포함)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
수행중 과제수	신규 신청가능 여부	신규 수행가능 과제수
2개	불가	불가
1개	가능	1개
0개	가능	2개

* 단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, 'R&D 기획역량 제고', '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', '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' 및 '이공계 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'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

-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 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□장비에 대해서는 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」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, 활용성,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

-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 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·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 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

※ 연구시설 장비라 함은 연구 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
※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 장비는 연구시설□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

-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 “4. 기술개발개요”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
-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을 적용함

9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기업청(기술협력보호과)	시행계획 공고	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	
관리기관	지방중소기업청	현장조사	관리기관 현황 참조
보증기관	기술보증기금	보증심사	032-830-5719

□ 관리기관 현황

기관명	전화	주소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2110-6358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77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292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	062-360-9158	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8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55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35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31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33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44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54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
제주특별자치도(기업지원과)	064-710-2638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
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: <http://www.tipa.or.kr>